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836

발의연월일: 2020. 9. 14.

발 의 자:정일영·이성만·신동근

한병도ㆍ허 영ㆍ이형석

김교흥 • 홍영표 • 박상혁

김수흥 · 이탄희 · 허종식

윤관석 • 박홍근 • 문진석

유후덕 의원(16인)

제안이유

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,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에 대해서도 5년 범위내에서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 부 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 제하고자 함(안 제31조의2제1항).

- 나.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해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 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고자 함(안 제31조의2제2항).
- 다.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·낙찰·체결·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(안 제31조의2제3항 신설)
- 라.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보조금의 성격상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1조의2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해당 보조사업자"를 "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해당 보조사업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"를 "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"로 하며,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,같은 조에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전단 중 "제1항 및 제2항"을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까지"를 "제5항까지"로 한다.

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입찰·낙찰·체결·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여야

한다.

-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에 따른 급여
- 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
- 3.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기초연금
- 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
- 5. 그 밖에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1조의2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Ŷ}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 등) ① 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------ 사실이 확인된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 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해당 보조사업자 -----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보조사 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 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 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 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 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 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해당하는 경우에는 <u>해당 보조금</u> 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 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 다.

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③ 중앙관서의 장은 <u>제1항 및</u> <u>제2항</u>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

그 사실이 확
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
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따라 해당 보조금수령자에 대하
<u>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
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
약의 입찰・낙찰・체결・이행
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
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
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
된 자에게는 판결이 확정된 날
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
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
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
행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
<u>④</u> <u>제1항부터</u>
제3항까지의 규정

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 조사업자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 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 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

- 여야 한다. 이 경우 통보를 받은 -----. -----
 -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 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 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 니할 수 있다.
 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 7조에 따른 급여
 - 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
 - 3.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기초 연금
 - 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2 조에 따른 복지 급여
 - 5. _ 그 밖에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실익 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 - <u>⑥</u> -----<u>제5항까지</u>-----

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·간접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·간접보조금 수급 제한 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·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통합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

•